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3461
----------	-------

발의연월일 : 2025. 10. 2.

발 의 자 : 서미화 · 최혁진 · 조계원
박지원 · 임오경 · 박상혁
인요한 · 박수현 · 성일중
이학영 · 백종현 · 김태선
차지호 · 김용만 · 백선희
의원(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선거,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있어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한 경우에는 선거비용 전액을, 10% 이상 15% 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선거비용의 50%를 보전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공직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중증장애인인 경우 리프트 유세차 등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이 비중증장애인 후보자에 비해 더욱 많음에도 선거비용 보전을 동일한 기준에 따라 받게 되어 지출한 선거비용의 보전에 있어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재는 선거에서 5% 이상 10% 미만의 득표율을 기록한 후보자는 선거비용을 전혀 보전받지 못하고 있는데, 후보자가 중증장애인

인 경우에는 비중증장애인 후보자에 비해 선거비용 지출이 더 크다는 점과 중증장애인의 정치참여 진입장벽을 낮춰 참정권을 두텁게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선거비용의 일부를 보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대통령선거,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등 공직선거의 후보자가 중증장애인인 경우 선거비용제한액을 비중증장애인 후보자의 선거비용제한액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중증장애인 후보자가 10% 이상 15% 미만 득표 시에는 현행 선거비용의 50%에서 상향하여 60%를 보전받도록 하며, 중증장애인 후보자가 5% 이상 10% 미만 득표 시에는 선거비용의 10%를 보전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증장애인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이 합당하게 보전받을 수 있도록 하고, 중증장애인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121조제4항 신설, 제122조의2제1항제1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1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제2호·제4호·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선거의 후보자가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이하 “중증장애인”이라 한다)인 경우 해당 후보자의 선거비용제한액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산정한 선거비용제한액에 100분의 11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제122조의2제1항제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 미만인 경우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후보자가 중증장애인인 경우에는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10 미만인 경우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1조(선거비용제한액의 산정) ① ~ ③ (생 략) <u><신 설></u>	제121조(선거비용제한액의 산정) ① ~ ③ (현행과 같음) <u>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u> <u>불구하고 제1항 제1호·제2호·제4</u> <u>호·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선</u> <u>거의 후보자가 「장애인연금</u> <u>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증</u> <u>장애인(이하 “중증장애인”이라</u> <u>한다)인 경우 해당 후보자의</u> <u>선거비용제한액은 제1항부터</u> <u>제3항까지에 따라 산정한 선거</u> <u>비용제한액에 100분의 110을</u> <u>곱한 금액으로 한다.</u>
④ (생 략) 제122조의2(선거비용의 보전 등) 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다 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 후보자 (대통령선거의 정당추천후보자 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 당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제122조의2(선거비용의 보전 등) ① ----- ----- ----- ----- ----- ----- ----- -----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선거비용[「정치자금법」 제40조(회계보고)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회계보고서에 보고된 선거비용으로서 정당하게 지출한 것으로 인정되는 선거비용을 말한다]을 제122조(선거비용제한액의 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비용의 범위안에서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국가의 부담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선거일후 보전한다.

1. 대통령선거, 지역구국회의원
선거,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
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
가. (생략)

나.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
투표총수의 100분의 10 이
상 100분의 15 미만인 경
우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
비용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illegible]

1. -----

가. (현행과 같음)

나.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
투표총수의 100분의 10 이
상 100분의 15 미만인 경
우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
비용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후보자

<u><신 설></u> 2. (생 략) ② ~ ⑤ (생 략)	<u>가 중증장애인인 경우</u> <u>에는 후보자가 지출한</u> <u>선거비용의 100분의 60</u> <u>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u> <u>한다)</u> <u>다.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u> <u>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u> <u>표총수의 100분의 5 이상</u> <u>100분의 10 미만인 경우</u> <u>후보자가 지출한 선거</u> <u>비용의 100분의 10에</u> <u>해당하는 금액</u> 2.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	---